

Gender-perspective of WWD를 관철 시키기 위하여

1. 메인 스트리밍에 대하여

- 1) 국제조약의 논의 특성상 장애 여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몇 개의 조항에만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이 특별한 조항 외의 모든 조항에는 장애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동일한 의미로 반복될 것이다.(교육에서의 평등, 자립생활에서의 평등, 법앞의 평등, 노동기회의 평등....)
- 2) 동일한 의미의 반복은 조약의 형식을 위하여 일반원리(Article2), 국가의 의무(Article4)에 포괄하여 하나의 항으로 넣는 것이 간결하다는 주장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논의를 처음으로 되돌린다.
- 3) 이 경우에, 장애여성에 대하여 언급되는 특별한 몇 개의 조항은 장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의 유형이 비슷하지 않은 폭력, 가족^{member}으로서의 권리, ...가 될 것이다.
- 4) 이러한 방식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은 언급된 몇 개의 조항 내에서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오히려 장애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2-1) 5) 다른 우려는, 장애여성에 대하여 언급된 조항에서는, 그 조항의 ^{main} ~~인식~~에 대한 일반적 조치들이 우선 인식되면서 시행되고, 장애여성을 위한 조치는 동등한 수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주요 rights}
- 6) 국가의 조약 이행 특성과 정도는 당장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of measure}이라는 것을 장애여성 이슈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2. 스페시픽 조항을 주장하는 이유

- 1) 조약의 큰 구조를 파악할 때 장애여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 2) 위 1)의 방식은 장애여성의 지위가 더욱 열악하고, 때로는 비참하기도 한 국가들에 사는 장애여성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다. 우리는 장애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장애여성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여성의 관점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 3) 몇 개의 조항에서만 언급될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
- 4) 차별의 강도와 특성에 있어서 장애남성과 아주 다른 경험과 장애여성만의 권리를 하나의 특별한 조항 속에 넣으므로써 장애여성의 권리를 집약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 5) 포괄적이며 집약적인 방식이란, 평등의 선언이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리보장이 시행되는 입법, 사법, 행정
(6) 구체적으로 권리보장이 시행되는 입법, 사법, 행정

3. 현재 제안된 15(bis) 간략 설명

- 1) 15(bis)의 1. 은 장애여성의 권리보장 조치에 대한 언급으로 일반원리에 들어갈 수 있으나, 스페시픽 아티클을 만든다면, 이 조항의 체계상 개별조항의 기본 원칙(다른 조항들처럼)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 2) 15(bis)의 2.는 자유, 안전, 자율을 통한 존엄성을 지키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집약해서 포괄하는 구체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집약해서 포괄적인 방식이란, (a)는 관련법률 속에 장애여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별개의 언급으로써 입법 조치를, (b)는 장애여성에 관한 사회조사를 통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행정 조치의 근거를, (c) 가족으로서의 권리와는 성격이 다른, 장애여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d) 젠더관점에서 장애여성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e) 장애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폭력 방지를 언급하였다.

4. 제안

- 1) 한국 NGO's는 특별한 조항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장애여성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
- 2) 스페시픽 조항이 전세계 장애여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전체NGO's의 입장을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면, 한국 정부가 제안한 15(bis)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일부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다.